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29
----------	--------

제출년월일 : 2024.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4. 10월 말 개장 예정인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2)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1) 소프트테니스장은 현재 직영 운영 중임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1)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및 인력 운용 관리 일체
- 2)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라. 민간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

바. 위탁시설 개요

- 1) 위 치: 마포구 망원동 450-3번지 망원유수지 내
- 2) 시설규모: 연면적 12,850㎡
- 3) 시설현황

연번	구분	면(홀)	총면적(㎡)	이용료
1	소 프 트 테 니 스 장	1	740	유료
2	파 크 골 프 장	9(홀)	6,000	무료
3	소 축 구 장	2	6,110	무료
소 계			12,850	

4) 위 치 도



사. 소요예산: 비예산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 2)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자. 민간위탁 추진일정

- 1) '24.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 2) '24. 11월 ~ 12월 : 수탁기관 선정
- 3) '24. 1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4) '25. 1월 : 위탁 운영 개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 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위탁사무명	망원유수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소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운영		
국 명 (주관부서)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행정 5급, 최한중, 9860)
		체육정책팀장	(행정 6급, 안중원, 9871)
		담당자	(행정 7급, 정지현, 9873)
사 무 개 요	○ 위탁사업 내용 1.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2.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장비·물품·비품 등의 유지관리와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료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		
민 간 위 탁 추 진 목 적	○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체육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		
위 탁 근 거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위탁내용	○ 추진현황(※ 최초 위탁의 경우 생략) : 최초위탁 ○ 위탁기간 : 3년 (2025.1.1. ~ 2027.12.31.) ○ 위탁내용 - 체육시설 관리 -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반환 등		

적 정 성 검 토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5조 등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기존) 수탁기관 및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 최초위탁 예정 ○ 수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소요예산: 비예산 ○ 선정방법: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
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	○ 수탁기관: 미 정 ○ 수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소요예산: 비예산 ○ 선정방법: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 위탁
민간 위탁금 (예산지원형 위탁 시 기재)	
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	○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운영함에 따라 체육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 2024. 10. :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 2024. 11. ~ 12. : 수탁기관 선정 - 2024. 12. : 협약 체결 - 2025. 1. : 위탁사무 시작